중소벤처기업부공고 제2020-39호

「중소기업 지원계획 및 추진실적의 작성·제출 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월 2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 지원계획 및 추진실적의 작성·제출 기관」 지정 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계획 및 추진실적의 작성·제출 기관'을 정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75개의 공공기관을 '중소기업 지원계획 및 추진실적의 작성·제출 기관'으로 신규 지정

3. 행정예고(공고) 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

3. 의견 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행정예고 기간내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상생협력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개 정(안)	수 정(안)	수 정 사 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bcmin@korea.kr

2) 주소 : (우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2동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과

3) 팩스 : 042-481-8960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과(☎ 042-481-3959)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중소기업 지원계획 및 추진실적의 작성·제출 기관」 지정 고시 1부. 끝.

중소벤처기업부고시 제2020-00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계획 및 추진실적의 작성·제출 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고시합니다.

2020년 1월 00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중소기업 지원계획 및 추진실적의 작성·제출 기관」 지정 고시

1.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주)강원랜드
2. 「상법」에 따른 그랜드코리아레저(주)
3. 「항만공사법」에 따른 울산항만공사
4. 「철도사업법」에 따른 주식회사에스알
5.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
6. 「한국감정원법」에 따른 한국감정원
7.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8.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환경공단
9.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10. 「사립학교교직원연급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11.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12.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공사
1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14. 「무역보험법」에 따른 한국무역보험공사
15.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언론진흥재단
16.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17.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18. 「민법」에 따른 (재)우체국금융개발원

19. 「민법」에 따른 (재)우체국물류지원단
20. 「민법」에 따른 (재)한국우편사업진흥원
2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2.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
23.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
24.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25. 「민법」에 따른 국제방송교류재단
26.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에 따른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27.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28. 「농림식품과학기술 육성법」에 따른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29. 「농촌진흥법」에 따른 농업기술실용화재단
30. 「독립기념관법」에 따른 독립기념관
3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원
3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33. 「방송법」에 따른 시청자미디어재단
34.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아시아문화원
35.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36. 「민법」에 따른 (재)대한건설기계안전관리원
37.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37.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진흥원
39. 「축산법」에 따른 축산물품질평가원
40.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한국건강증진개발원
41.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
42.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른 한국과학창의재단
43.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에 따른 한국교육학술정보원
44. 「한국국제협력단법」에 따른 한국국제협력단
45. 「기상산업진흥법」에 따른 한국기상산업기술원
46. 「노인복지법」에 따른 한국노인인력개발원
47. 「전파법」에 따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48.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49.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50.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한국보육진흥원
51.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52.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5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5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5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한국석유관리원
56.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
57. 「소비자기본법」에 따른 한국소비자원
58.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한국수산자원공단
59.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60.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61. 「에너지법」에 따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62.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른 한국연구재단
6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6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65.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66. 「한국재정정보원법」에 따른 한국재정정보원
67. 「전기사업법」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
68. 「전기사업법」에 따른 한국전력거래소
69. 「청소년복지지원법」에 따른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70. 「청소년활동진흥법」에 따른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71. 「민법」에 따른 한국특허전략개발원
72.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73.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따른 한국해양수산연수원
74.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
75.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에 따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